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발의】



2019. 6.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3호로 2019년 6월 5일 이규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노인층 증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사회보장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